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2,037,505	15,961,125
일반회계	448,453,416	13,453,602
특별회계	83,584,089	2,507,523
기타특별회계	83,584,089	2,507,5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729,599	411,88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80,156	23,405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354,000	10,62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1,200	3,63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092,285	152,76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43,600	13,30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29	64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4,322,477	429,674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48,028,000	1,440,840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10,643	21,3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2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